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60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남인순·오세희·용혜인
서영석·허종식·박 정
이수진·김남희·송재봉
손명수·전용기·김 윤
이해식·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조공학사”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의 제목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을 “(보조공학사의 자격 및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① 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조공학사는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가시험 등) 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조공학사”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을 말한다.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보조공학사의 자격 및 업무 등) ① 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종류·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조공학사는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 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
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

-----.

제15조의2(국가시험 등) ① 보조
공학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
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
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
한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